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4. 12. 9.

발 의 자 : 조 국 · (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고, 그 위배의 정도는 대통령 직에 대한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으로서 피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정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균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명태군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임하여 대선여론조사 조작을 모의하고, 대통령의 직위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한편, 이와 같은 공천개입을 명태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비용 약 3억 7,5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창원 제2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이전부터 명태균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근 토지매입을 권유하고, 창원시청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4건의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고, 직접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안내하고, 강혜경에게 홍보 팸플릿에 윤석열과 관련된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라고 말하는 등의 언행으로 윤석열 대통령 및 그 부인 김건희를 통해 산단 지정 및 그 부지 선정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상 비밀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중대하게 위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및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반란행위(헌법 제77조, 형법 제87조, 제91조, 군형법 제5조)

가. 비상계엄선포행위 및 그 이후 전개된 경위 사실

2024. 11. 26. 김용현 국방장관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함으로써 그 이후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날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의 ‘경고 사격 후 원점 타격’ 지시는 무위에 그쳤다.

12. 3. 22:25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여 “중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라며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 제77조 제4항에 정하는 국회에 대한 계엄통고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박안수를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포고령을 발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차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차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와 함께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전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착수하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하여 2024. 12. 3. 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 등 주요 정치인과 민간인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같은날 22:53경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라,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사후적으로 밝히며 “미리 얘기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말

했고, 이 통화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결의안 참여를 곤란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한 정치인 및 민간인을 경기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다음 전화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의 위치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간부회의를 통하여 독거 수용자들을 혼거(단체 수감방)방으로 옮기로 독방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하달했다.

한편 같은날 22:33경 계엄군 약 1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에 진입한 다음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고, 계엄군이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였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와 같은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접수 조치의 목적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22:57경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고, 비상계엄 후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

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였다. 또한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다.

국회는 12. 4. 01:00 국회의원 190인이 참석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외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01:02 이 결의안은 190인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와 같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2. 4. 04:30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나. 직무집행 행위

헌법 제65조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헌법재판

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본 건에 관하여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 제77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헌법과 법률 위반

(1)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비상계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지극히 평온한 상황에 있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셋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하고 있는바, 헌법 및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선포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을뿐(헌법 제77조 제3항), 국회의 권능을 변경하는 그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하고(헌법 제77조 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헌법 제77조 제5항) 등을 통하여 계엄시 국회에 의한 통제를 당연한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엄법 제15조). 이와 같은 헌법 및 계엄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상계엄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권능에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은 명확하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은 헌법 및 계엄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2)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 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항이 헌법 및 계엄법위반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은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행

위 및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고,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접수한 행위 역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시 기준에 비추어,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를 접수한 점, 윤석열 대통령의 여인형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체포·수감 지시에 따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한 정치인 및 민간인을 경기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점,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점,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임무대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점, 경찰에 속하는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한 군병력이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이라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구체적으로 차단·방해한 점,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

법 제87조, 제91조가 정하는 내란죄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3)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균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균형법 제5조는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인 점, 계엄군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거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고 국회에 병력을 출동하여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여 수감하고자 하였고, 국회경비대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고, 군병력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점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이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공모,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고자 반란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는 군

형법 제5조가 정하는 반란죄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비상계엄 발령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이라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 및 형법, 군형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2. 이른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한 대선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등 수뢰 관련(헌법 제7조, 헌법 제8조,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57조의 6 제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가. 경위사실

(1) 대통령 당선 이전 진행된 경위 사실

명태균(2024. 11. 15. 구속)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태열 명의로 경남 창원시 소재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경남 일원에서 속칭 ‘정치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명태균은 2017. 8.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입후보를 염두에 두고 창원을 방문한 김영선의 공보물 제작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김영선과 교류하며 친분을 유지해 왔고, 2021. 6.경 당시 검찰총장 직을 사퇴한 뒤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활동을 시작한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를 소개받자 김건희에게 “당신은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탄 앓은뱅이 주술사”라고 말하는 등으로 환심을 샀고, 이를 기회로 윤석열 부부에게 수시로 정치적 조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및 이른바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연락책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명태균은 2021. 4.경부터 2022. 3.경까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총 81회 상당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위한 맞춤형 공표 또는 자체 미공표 여론조사를 비용 약 3억 7,52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강혜경 등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 달라”,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갖고, 곱하기 해 갖고 한 2,000개 만드이

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흥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하고 ARS 응답자 표본을 부풀리거나 미리 ARS를 돌려서 응답자의 지지성향을 확인한 뒤 공식 여론조사 날에는 방해조사를 하는 수법 등 언행으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직접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윤석열에게 보고하였다.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대선캠프 관계자에게 공유했고, 동 여론조사 결과는 캠프 내 전략회의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명태균은 2021. 9.경 및 2022. 4.경 김건희로부터 2회에 걸쳐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명태균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실시한 동 여론조사 비용을 대선회계에 반영처리하지 않았으므로, 거액이 소요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태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윤석열은 명태균에게 3억 7,52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된 경위 사실

명태균은 2022. 3. 20.경 김영선의 전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에게 “윤석열 부부에게 돈을 받아오겠다”며 여론조사 비용 3억 6,000만원 상당에 대한 정산내역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동 정산내역서

를 소지한 채 서울로 가 윤석열을 만나 이 돈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윤석열이 이에 대해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 무렵 윤석열 부부에게 위 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윤석열은 명태균으로부터 이와 같은 청탁을 받자, 대통령 당선인 지위와 권세를 활용하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에게 김영선을 전략공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윤석열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김건희는 2022. 5. 2.경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도와줘서 고맙다. 김영선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 선물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윤석열은 2022. 5. 9.경 명태균과 통화하며,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등으로 김영선을 공천해 달라는 명태균의 상기 청탁이 성사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윤석열로부터 김영선의 공천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명태균은 윤석열에게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윤석열과 명태균 간의 통화가 끝난 직후 김건희는 명태균에게 전화하여,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명태균은 김건희와의 통화를 마친 직후 강혜경에게 전화하여,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말하며, 강혜경에게 김영선에 대한 본선 후보용 현수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명태균 부부는 2022. 5. 10.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여 윤기중, 권오수의 아들 권혁민 등과 주요 인사석에 자리하였고, 같은 날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외창 지역 공천신청자 8명 중 김영선을 전략공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명태균은 제20대 대선후보 국민의힘 경선 및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80여건)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윤석열 후보 측에 보고하거나 전달(선거당일에도 ‘명태균 보고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3억 7,520만원), 그후 명태균은 여론조사비용을 받지 않고, 대신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 등을 대가로 받았다.

나. 직무집행 행위

헌법 제65조의 직무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다. 한편,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¹⁾ 등).

본 건에 관하여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명태균과 공모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것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인 때였으므로 헌법 제65조의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이후 국민의힘 소속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헌법 및 법률위반

1) 위법행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서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탄핵은 위헌·위법의 특정 고위공직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는 탄핵의 준거로서 직무집행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1) 헌법위반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있게 업무를 수행할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한편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정당의 활동, 특히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제7조 제2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공익 실현 의무(헌법 제69조) 등을 저버리고, 나아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및 정당민주주의 제도(헌법 제8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본바와 같이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 비용 약 3억 7,520만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 등을 대가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발현되는 공익 우선 의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명태균이 윤석열 측에 청구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520만원 상당의 돈은 국민의힘이 이를 공식 대선회계에 반영처리하지 않은 이상, 여론조사 결과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채무로 귀착되고, 윤석열·김건희가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동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았다면 이는 수뢰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에게 직접 연락하여 공천을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이 단수공천 되었으므로 이는 수뢰후부정처사이고, 수뢰액이 1억원을 상회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은 물론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어야 하는 중범죄이다.

대통령은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통할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당의 이른바 1호 당원으로서 당정 간의 업무협약, 정부 입법,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한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과 여당과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확정적 채무면제 방식으로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구체적 직무행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된다. 더욱이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소속 정당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행사를 노골적으로 기대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 또한 뚜렷하다.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공여받은 재산상 이익은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확정적 채무면제라는 점에서 이는 적어도 김영선에 대한 전략공

천이 발표된 시점에서야 범죄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전략공천 발표일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이었으므로,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에서 수뢰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공직선거법위반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헌법 제8조제2항). 한편 정당민주주의하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운동을 거쳐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은 ‘정치적 헌법기관’ 혹은 ‘정치인’의 지위를 갖고 특정 정파의 정책이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는 방법이고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의 공정성 요청은 매우 중요하고 필연적인바, 공명선거의 책무는 우선적으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어 있지만(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

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금지 위반(제57조의6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제255조 제3항 제1호),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제86조 제1항 제2호)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제255조 제1항 제10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억 7,52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받고 김영선 공천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

품수수금지 위반(제47조의2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게 된다(제230조 제6항).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왜곡·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그 정을 알면서 캠프 관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면, 법원은 일관되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금지 위반(제96조 제1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며(제252조 제2항),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이 명태균이 주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왜곡·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를 독려하며 보고받았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된다.

(다)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1호). 또한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5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갚아야 될 개인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김영선 공천을 관철하였다면 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기부의 제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제45조 제2항 제5호),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도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이다.

라.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결국 이상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의 대가로 명태균에게 지급하여야 거액의 채무를 면제받은 행위, 여론조사 왜곡·조작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그 결과를 활용한 행위 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1항),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헌법 제7조 제2항),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위반(헌법 제69조)임과 동시에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이는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 부정특혜 금지) 위반,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위반,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위반,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금지) 위반,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위반,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위반,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위반 등 다수 법률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범증이 뚜렷함은 물론 해당 법정형만 보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며, 특히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 결과가 명백히 예상된다²⁾.

2) 위 법률위반 중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위반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행위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즉 대통령 취임 이후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3.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국정농단(헌법 제7조 제1항, 제 69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가. 경위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15.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 339만㎡ 터에 1조 4215억원을 들여 2030년까지 방위·원자력 첨단국가산업단지(창원 제2국가산단)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명태균은 발표 이전인 2022. 9.경부터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관여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근 토지매입을 권유하고, 2022. 11. 9.경 김영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 직함을 자칭하며 창원시청 고위공무원들로부터 4건의 대외비 문건을 보고받고, 2022. 11. 23.경 직접 국토교통부 실사단을 안내하고, 강혜경에게 홍보 팸플릿에 윤석열과 관련된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라고 말하는 등 언행하였는바,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 산단 지정 및 그 부지 선정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공무상 비밀을 취득하였다³⁾.

않는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명태균 국정농단 일련의 사태 중 중요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탄핵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한편 윤석열은 2022. 6. 22.경 경남 창원시 소재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하고, 2022. 7. 28.경 울산광역시 소재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직무관련성

헌법 제65조의 직무상의 행위란 앞서 언급한바와 같다. 본 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행위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헌법 및 법률위반

헌법 제7조 제1항,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은 공익실현의무 및 헌법준수·수호의무를 가지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의무는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다. 특히 대통령은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계 관련 주식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수 알게 되므로, 대통령의 비밀엄수의 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

명태균이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여부, 부지선정 등에 개입하는 것을 윤석열이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또는 김건희 등을 통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윤석열이 직접 또는 김건희 등을 통하여 명태균에게 경호상 기밀사항인 대통령 일정과 동선 등을 누설하였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크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큰 중요사항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누설된 것임은 물론 명태균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

라. 소결 :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 및 헌법준수·수호의무(헌법 제7조 제1항, 제69조)를 위배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4. 탄핵사유의 중대성

가. 중대성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이 파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즉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범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 결정이 정당화되며,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

의 신임을 잃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범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화된다.

나. 검토 : 파면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과 피 소추자의 국민 신임 배반

대통령 윤석열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기치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기운을 촉진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 수호라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임을 내팽개치고 있다.

아울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균형잡힌 정책이나 정치 정상화 등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국회가 입법한 법률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비정상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언론장악 등 결과를 위해서 형식적인 법률에만 부합하면 된다는 우리 헌법의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하는 편협한 사고로 일관하여 정국이 경색되고 사회·문화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효과만 축적되면서 국민의 기대와 지지는 더욱더 멀어져 갔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고 최소한도의 법치주의 원칙조차 스스로 저버린 채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토록 강하게 비판하였던 선택적 정의·기소와 수사 외압·무마 등을 버젓이 자행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되었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라는 치명적인 국민적 배신을 되풀이하면서 이와 관련된 배우자의 몰상식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의 남용과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습에서 국민은 어떠한 희망과 발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통하여 밝혀진 대선시 여론조작,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및 이를 통한 수수 뇌물에 상응하는 공천 보답 의혹 등이 더욱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바 없는 부인 김건희가 명태균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등이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대통령 부부의 육성 및 문자메시지 등은 그 자체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개입이라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은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부인의 잘못을 옹호하고, 명태균 의혹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깊이 실망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긴급하고 비상한 헌법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법이 정해둔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에 대한 검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회 통고 등의 절차 또한 전혀 지키지 않은 명백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 우리 헌정체제는 일찍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및 12·12 군사반

란과 그에 이은 5·18 광주학살의 비극을 경험한바 있다. 이와 같은 헌정사의 아픔으로 인하여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헌법 제5조 제2항), 국민들 역시 군부의 반헌법적 망동에 대한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한편, 이후 경찰력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총기를 휴대한 군병력으로 하여금 본청에 진입하게 한 다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여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고자 한 것은 우리 헌법질서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비상계엄선포 행위, 이른바 명태군 게이트 사태를 통하여 밝혀진 명태군과 공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및 이로써 갈음한 수뢰행위,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부정적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며, 특히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 및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직접 지시하고,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등의 망동을 목도함으로써 인하여 받은 충격의 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중단시키고 중도에 파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봄이 합당하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하여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른 것이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